

<p>一般廢棄物 收集·運搬業의 許可, 許可取消, 營業停止命令 등에 관한 事務 外에 2件의 業務를 新規로 區廳長에게 委任을 하고, 都市計劃事業 實施計劃의 認可 등 外 2件의 都市計劃 關聯事務를 追加로 區廳長에게 委任하는 內容입니다.</p> <p>우리 委員會에서는 清掃代行業體 許可 및 許可取消 등의 權限을 區廳長에게 委任하는 것은 清掃體系 確立과 代行業體에 대한 效果的인 指導監督을 기할 수 있고, 都市計劃 關聯事務의 委任은 區單位 都市基本計劃을 樹立하는 등 區廳長의 都市計劃 關聯機能을 대 폭 強化시켜 주는 것으로 地方自治의 活性化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同 改正條例案을 出席委員 全員 一致로 原案 可決하였습니다.</p> <p>구체적인 審査內容은 配布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議決해 주실 것을 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p> <p>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議長 白昌鉉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님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各各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4항중 “시정연구관·투자관리관”을 “정책 기획관·재정기획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관계 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한다.</p> <p>제4조제1항중 “6월 30일”을 “8월 31일”로, 동조제2항중 “7월 31일”을 “9월 30일”로, 동조제3항중 “8월 31일”을 “10월 31일”로 한다.</p> <p>제6조제3항중 “5월 20일”을 “7월 31일”로 한다.</p> <p>제7조제2항중 “10월 31일”을 “사업연도 개시 35일전”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p> <p>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의 보사환경국란에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3.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허가 및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p> <p>나. 청문 및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경고 등의 행정처분</p> <p>다.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p> <p>라. 보고 및 자료의 청구와 검사 등</p>	<p>○폐기물관리법 제17조</p> <p>○동법 제19조, 제56조, 제57조</p> <p>○동법 제42조</p> <p>○도법 제43조</p>	<p>구 청 장</p>

[별표]의 도시계획국란중 제8호·제13호·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3호·제7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8.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공람 및 고시(다음에 한하되 시장이 시행하거나 시장이 시행자 지정된 사업을 제외하며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p> <p>가. 도시계획시설</p> <p>나. 일단의 주택조성사업</p>	<p>○도시계획법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p>	<p>구 청 장</p>
<p>13. 도시계획의 입안(다음의 사항에 한하되, 서울특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다)</p> <p>가. 지역</p> <p>나. 지구</p> <p>다. 도시계획시설(다음을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궤도의 신설 • 주간선도로와 그에 접하는 교통광장의 신설 	<p>○도시계획법 제11조</p>	<p>구 청 장</p>
<p>19.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도시계획시설에 한하되 시장이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p>	<p>구 청 장</p>
<p>7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p>	<p>○도시계획법 제12조</p>	<p>구 청 장</p>

<p>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중 다음사항(단,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또는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제외한다)</p> <p>가. 도로(폭12m이하에 한한다)</p> <p>나. 광장(폭12m이하 도로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주차장(부지면적 3,000㎡이하에 한한다)</p> <p>라. 하천(폭6m이하에 한한다)</p> <p>마. 운동장(부지면적 3,300㎡이하에 한한다)</p> <p>바. 공공공지</p> <p>사. 공용의 청사(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 등 지역단위 청사에 한한다)</p> <p>아. 학교(유치원, 새마을유아원에 한한다)</p> <p>자. 도서관(200석이하의 일반도서관에 한한다)</p> <p>차. 수도(저수용량이 5,000톤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한다)</p> <p>카. 하수도(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p> <p>타.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전시설에 한한다)</p> <p>파.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한다)</p> <p>하. 방수설비</p> <p>거. 사회복지시설</p>		
--	--	--

<p>74.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중 다음사항</p> <p>가. 단위 도시계획시설 구역면적의 20분의1 미만인 구역(공원 및 녹지의 경우를 제외한다)</p> <p>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구역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의 변경결정</p> <p>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p> <p>라.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p>	<p>○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p>	<p>구 청 장</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서울特別市長 提出) 23. '94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議案番號 904) (서울特別市長 提出)</p>	<p>(16時 18分)</p>
<p>17. 서울特別市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8. 서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19.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20.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21. 서울特別市型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22.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7項 서울特別市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18項 서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9項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0項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1項 서울特別市型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 議事日程 第22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3項 '94市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議案番號 904), 이상 7件을 一括上</p>	